
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
(박대수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5543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0. 11. 19.

발 의 자 : 박대수 · 정동만 · 윤주경  
서범수 · 김희곤 · 김영식  
구자근 · 권영세 · 김석기  
지성호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로 하여금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인 “직장 내 괴롭힘”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괴롭힘 행위를 한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,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나,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경우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신고에 대해 조사, 행위자에 대한 징계, 근무장소 변경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500만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적 제재방안을 마련하고, 사용자가

근로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11조 및 제116조).

##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1조 중 “제31조제3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”을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제31조제3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
2. 제76조의2를 위반한 사용자

제116조제1항제2호 중 “제74조제7항”을 “제74조제7항, 제76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11조(벌칙) <u>제31조제3항에 따라</u>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제116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제14조, 제39조, 제41조, 제42조, 제48조, 제66조, <u>제74조제7항</u>, 제91조, 제93조,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</p>	<p>제111조(벌칙) <u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1. <u>제31조제3항에 따라</u>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</p> <p>2. <u>제76조의2를</u> 위반한 사용자</p> <p>제116조(과태료) ①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<u>제74조제7항</u>, <u>제76조의3제2항부터</u> <u>제5항까지</u>----- -----</p>

<p>3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	<p>-----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